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71
----------	-------

발의연월일 : 2023. 4. 21.

발의자 : 김도읍 · 장동혁 · 김석기
박형수 · 양금희 · 조수진
유상범 · 김성원 · 김용판
전봉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끝난”이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

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끝난”을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 ----- ----- -----. 1.·2. (생 략)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u>끝난</u>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u>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